

## 과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의안 번호	4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7.04.19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- 본 구역은 부산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·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함
- 이에 주택재개발을 통한 노후·불량 건축물의 개량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### 2. 정비계획 결정(안) 개요

- 위 치 : 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
- 면 적 : 40,018㎡(12,105평)
- 용도지역/지구 : 제3종일반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
- 신청자 :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

### 3. 관련규정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)제1항에 의거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

### 4.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

#### 가.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조서

지정구분	사업의 구분	구역의 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 설	주 택 재개발사업	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	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	40,018	

※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2005.09.21, 부산시고시 제2005호-267호)

※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(2006.09.27, 부산시고시 제2006-336호)

## 나. 주택재개발 정비계획

○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총 계	40,018	-	40,018	100.0	
주거 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38,754	감)38,754	-	
	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38,754	38.754	96.8
자연녹지지역	1,264	-	1,264	3.2	

○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

- 해당사항 없음 -

○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	계	40,018	100.0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38,754	96.8	
	자연녹지지역	1,264	3.2	
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	-	-	-	
택지 및 정비가반시설 (도시계획시설)	계	40,018	100.0	-
	【택 지】	31,599	79.0	-
	공동주택용지	31,599	79.0	-
	【정 비 기 반 시 설】	8,419	21.0	-
	도 로	6,524	16.3	-
	공 공 공 지	1,895	4.7	-

○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계획

1)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 과 지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등급	류 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3	166	6	국지 도로	438	과정동 1238-19	과정동 산1-44	일반 도로	-	부고 제10호 ('90.1.15)	
변경	소로	3	166	6	국지 도로	172	과정동 220-21	과정동 220-19	일반 도로	-	-	노선축소(L=266m)
신설	중로	3	A	12	국지 도로	370	과정동 1238-19	과정동 산1-49	일반 도로	-	-	-
기정	소로	3	167	6	국지 도로	770	과정동 194-2	과정동 220-4	일반 도로	-	부고 제10호 ('90.1.15)	
변경	소로	3	167	6-9	국지 도로	630	과정동 194-2	과정동 산1-49	일반 도로	-	-	노선축소(L=140m) 일부구간 노선확폭 (L=193m, B=3m) 및 선형변경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3류166호선	소로3류166호선	노선축소	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진입로 계획을 위한 노선축소
-	중로3류A호선	노선신설 (L=370m, B=12m)	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소로3-166호선의 노선단절로 인한 신설
소로3류167호선	소로3류167호선	노선축소, 일부구간 노선확폭 및 선형변경	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진입로 계획을 위한 노선축소, 일부구간 노선확폭 및 선형변경

2)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①	공공공지	사하구 과정동 산1-56번지 일원	-	증) 269	269	-	
신설	②	공공공지	사하구 과정동 218-31번지 일원	-	증) 529	529	-	
신설	③	공공공지	사하구 과정동 산1-49번지 일원	-	증) 346	346	-	
신설	④	공공공지	사하구 과정동 산8번지 일원	-	증) 751	751	-	

3) 정비기반시설(도로)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폭 원(m)	연 장(m)	면 적(㎡)	비 고
신설	도 로	사하구 괴정동 211-10번지 일원 (중로3-103호선변)	3	97	257	

○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 분	계 획	비 고
공동이용시설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	

○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정비구분	지구 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	합 계	40,018	-	40,018	-	272	-	-	272	-	
신설	괴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40,018	1-1	31,599	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	235	-	-	235	-	공동주택
			1-2	269	사하구 괴정동 산1-56번지 일원	-	-	-	-	-	공공공지
			1-3	529	사하구 괴정동 218-31번지 일원	2	-	-	2	-	공공공지
			1-4	346	사하구 괴정동 산1-49번지 일원	6	-	-	6	-	공공공지
			1-5	751	사하구 괴정동 산8번지 일원	8	-	-	8	-	공공공지
			-	6,524	사하구 괴정동 1238-19번지 일원	21	-	-	21	-	-

○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층수 등에 관한 계획

결정구분	지구 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및 층수	비고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				
신설	과정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	40,018	1-1	31,599	사하구 괴정동 216-10	공동주택	50%이하	255%이하 (기준 : 220%이하 완화 : 35%)	110m이하 35층이하	
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(741세대)의 40%이상(633세대)을 85㎡이하로 건설</li> </ul>								
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(741세대)의 8.5%이상(68세대)을 임대주택으로 건설</li> <li>임대주택의 30%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.5%이상 ⇒ 40㎡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(68세대)</li> </ul>								
용적률 완화기준 적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</li> <li>부산광역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267호) 완화용적률 산식적용                      - <math>1.5 \times (\text{제공면적 } 5,127\text{㎡} \div \text{제공후 대지면적 } 31,599\text{㎡}) \times 100\% = 48.7\%</math>                      - 기준용적률 : 220%(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)                      - 허용용적률 : <math>220\% + 48.7\% = 268.7\%</math>                      - 계획용적률 : 255%이하                      계획용적률은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</li> </ul>								
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로3-103호선(B=12m)</li> <li>폭원 : 3.0m(대지경계선 기준)</li> </ul>								

○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

결정구분	가구번호	면적 (㎡)	획 지		시행지구 분할계획	비고
			위 치	면적 (㎡)		
신설	1	33,494	1-1	31,599	-	공동주택
			1-2	269	-	공공공지
			1-3	529	-	공공공지
			1-4	346	-	공공공지
			1-5	751	-	공공공지
합 계		33,494	-	33,494	분할없음	-

## ○ 도시경관·환경보전·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
도시경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주변 인접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</li> <li>조양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</li> </ul>	도시경관 계획반영
환경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도 및 광장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,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</li> <li>토공사시 발생하는 잔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며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으로 지반의 침하방지</li> <li>구역외곽부 녹지대 조성, 단지내 조경시설 등 녹지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</li> <li>청정연료(LNG) 사용,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</li> <li>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실내공기오염 최소화</li> <li>발생우수 전량을 인접 도로변에 가설치된 차집관로에 연결,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</li> <li>구역내 발생우수 전량을 BOX를 설치·사전 배제하여 정비구역 경계부로 지나는 우수관거로 유입토록 계획</li> <li>철거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토록하며, 재활용외의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 우선적 수거처리 및 사업완료 후 생활계폐기물 부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재활용, 분리수거 및 매립처리</li> <li>도로변에 녹지 조성 및 수목을 식재하여 완충지대 형성 및 수목의 흡음 효과를 통하여 교통소음 완화</li> </ul>	환경보전 계획반영
재난방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</li> <li>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 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및 계측기를 설치,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을 조상하여 안전시공 및 공사진행 관리 자료로 활용</li> <li>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선설치,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, 노출공간에 우기시 수방자재를 이용하여 피복, 사면경사 기준으로 시공 등 토사유출방지 계획</li> <li>사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</li> </ul>	재난방지 계획반영

## ○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

-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: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
-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

○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: 420세대

○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

-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계획 참조

### 5. 연 황

- 위 치 : 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
- 면 적 : 40,018㎡(약 12,105평).
- 가구 및 인구현황

거주가구(세대)			거주인구(인)			권리자(인)				
계	건축주	세입자	계	건축주	세입자	계	토 지 소유자	건축물 소유자	토지및 건축물 소유자	지 상 권 자
321	60	261	971	222	749	365	281	5	75	4

- 도시관리계획 현황

용도지역	용도지구	도시계획시설(도로)		기 타	
		종 류	규 모	종 류	규 모
제2종 일반주거지역	-	소3-166	B=6m.    L= 438m	-	-
자연녹지지역		소3-167	B=6m    L= 770m		

○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요건 현황

• 정비구역 일반 현황 총괄

토지현황	구분	계	사유지	국·공유지(관리청별)					비고		
				소계	건교부	재경부	사하구				
	면적(㎡)	40,018	36,301.44	3,716.56	2,785.00	221.00	710.56				
필지수	114	105	9	2	1	6					
건축물현황	구분	계	허가유무		용도별 허가유무					비고	
			허가	무허가	주거용			비주거용			
				소계	허가	무허가	소계	허가	무허가		
	동수	272	89	183	262	82	180	10	7	3	-
호수	77								집합건축물		
거주자 및 권리자현황	거주가구			거주인구			권리자(인)				
	계	건축주	세입자	계	건축주	세입자	계	토지소유자	건축물소유자	토지및건축물소유자	지상권자
	321	60	261	971	222	749	365	281	5	75	4

• 과소토지 등의 현황

구분	구역안의 총토지		부 적 격 토 지					
	필지수	면적(㎡)	계		건축대지 효용 미달토지(60㎡)		부정형·세장형토지(최대폭 3m이하)	
		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
합 계	114	40,018	31	2,815	20	551	11	2,264
일반토지	100	37,362	19	1,849	12	354	7	1,495
정비기반 시설토지	14	2,656	12	966	8	197	4	769

주) 정비기반시설토지 : 도로, 구거

• 건축물의 노후 불량 등의 현황

구 분	노후불량비율 (노후·동수)	노후불량 등의 유형				
		계	구조상 불량동수	건축설비상 불량동수	기 타	
합계	262/272 ×100 =96.3%	262	170	-	92	
구조별	합계	96.3	262	170	-	92
	철근·철골콘크리트	1.1	3	-	-	3
	연와 및 석조	87.1	237	157	-	80
	목 조	3.7	10	6	-	4
	기 타	4.4	12	7	-	5
존치 기간별	합계	96.3	262	170	-	92
	20년 미만	1.5	4	-	-	4
	20~29년	88.6	241	153	-	88
	30~39년	6.2	17	17	-	-
허가별	합계	96.3	262	170	-	92
	유허가	29.8	81	69	-	12
	무허가	66.5	181	101	-	80

• 구역면적 및 인구현황

구역명	구역면적 (㎡)	인구수		세대수		비 고
		전체인구수	인구밀도(인/ha)	기존세대수	예정세대수	
괴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	40,018	971	242.64	321	741	

**6. 관련부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: 따로 붙임**

**7. 주민공람·공고**

- 공람기간 : 2007. 3. 14 ~ 2007. 3. 30(17일간)
- 공람장소 : 사하구청 건축과
- 공람방법 : 사하구청 게시판, 부산시보에 게재
-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: 의견 없음

**8. 가로구역 최고높이 지정(안) 공람·공고**

- 공람기간 : 2007. 3. 14 ~ 2007. 3. 30(17일간)
- 공람장소 : 사하구청 건축과
- 공람방법 : 사하구청 게시판, 부산시보에 게재
-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: 의견 없음

### 관련부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

[부산광역시]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재개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인센티브</li> <li>·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(5%이내) 가산함.</li> <li>- 재개발담당관실-472(2006.1.23)호 공문 참조.</li> <li>◦ 특수도로(보행자전용도로) 3-B 및 공공공지(1-6, 1-7)는 공공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검토 요함.</li> <li>◦ 공공공지(1-3)에 대하여는 중로3-A 도로와 연계하여 도로로 사용되도록 검토 요함.</li> <li>◦ 산지와 접한 소로3-167 및 중로3-A 도로 구간 옹벽구조물이 약 10M정도 예상되므로 자연녹지지역의 법면처리가 최소화되도록 검토 요함.</li> <li>◦ 지역여건상(해발고도 100m 이상지역) 건축물 전체 높이(층수)가 높으므로 높이(층수)를 하향조정 요함.</li> <li>◦ 자연녹지지역 일부의 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기본 계획고시의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 불가능한 실정임.</li> <li>◦ 용적률 인센티브 계산방식에 의한 산출근거 제출 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특수도로(보행자전용도로) 3-B 및 공공공지 1-7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였으며, 공공공지 1-6은 구역에서 제외시켜 구역계를 변경하였음.</li> <li>◦ 중로 3-A도로의 선형을 변경하여 공공공지 1-3이 도로로 사용되도록 계획하였음.</li> <li>◦ 자연녹지지역의 법면처리가 최소화되도록 자연석 쌓기 등으로 계획하겠음.</li> <li>◦ 가로구역 상의등을 거쳐서 결정되는 높이에 따르도록 하겠음.</li> <li>◦ 자연녹지지역의 공공공지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인센티브를 산정하겠음.</li> <li>◦ 정비계획신청 서류에 산출근거가 제출되어 있음.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추후 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
건축 주택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획지 형태상 일반적 세장비를 초과하므로 가구를 횡단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하여 보행자의 편의도모 검토 요함.</li> <li>◦ 건축물의 높이는 구역계 배후의 산지 특성을 감안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 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 완료 후 사업지 주변에 주거지 형성이 전무하여 가구를 횡단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) 계획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지내 보행자가 진입가능한 단지내 연결도로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음.</li> <li>◦ 배후 산지특성을 감안하여 자연스러운 형태의 높이계획을 수립하여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유도토록 계획하겠음.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

관련부서	협 의 의 건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시 설 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종로3-A호선 시점에서 협신신태양맨션 주출입구까지는 3차로이상 확보 및 양측으로 보도 설치 요함.</li> <li>◦ 소로3-167호선 사업지내 구간은 사업지측으로 보도 설치요함.</li> <li>◦ 종로3-103호선 중 사업지와 접하는 부분은 3차로이상 확보 및 양측으로 보도 설치 요함.</li> <li>◦ 종로3-103호선 중 대티로에서 사업부지 남측과 접하는 구간은 영풍마드레빌 주택사업지와 협의하여 개설토록 검토 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추진입로의 경우 현황 6~8m 도로를 12m로 확장개설 하였으나 3차로 운영은 불가능하며, 확폭도로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음.</li> <li>◦ 사업지측으로 보도 설치하겠음.</li> <li>◦ 사업지와 접한 구간을 3m 확폭하여 (B=12→15m) 3차도로 운영하고 양측에 보도를 개설하겠음.</li> <li>◦ 인접사업지 영풍마드레빌 사업지 및 구청과 개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음.</li> </ul>	반영  반영  반영
도 로 계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간선도로(낙동로)에서 사업지까지의 진입도로는 사업지 인근 아파트 건설과 본사업지의 공동주택건설로 인한 입주인들의 차량 증가로 인하여 차량증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교통대책수립을 사전 검토 요함.</li> <li>◦ 도시미관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종 지장주(전기, 통신 등)는 지중화 될 수 있도록 계획 검토 요함.</li> <li>◦ 도로개설 및 확장 도로(보도 및 Set Back부분 포함)는 개설 후 도로관리 유지(도로굴착 등)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의 도로로 사용되도록 조치 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단지내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주변가로 정체를 해소하기위해 사업지와 접한도로 개설 및 확장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음.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.</li> <li>◦ 관련기준에 의거 계획에 반영하였으며, 개설 후 기부채납토록 하겠음.</li> </ul>	반영  반영
교 통 기획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차로인근 주차장 진출입로를 사업지 북서측으로 이전 검토 요함.</li> <li>◦ 사업지내 어린이 놀이터로 접근이 원활하도록 보행보도 확보 검토 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음..</li> <li>◦ 건축계획에 반영하겠음.</li> </ul>	반영  반영
하수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협의지는 장림하수처리구역으로서 인근 차집관로(맨홀)에 직접연결처리가 가능하며, 하수관로는 우·오수 분류식으로 설치 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.</li> </ul>	반영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녹지 공원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대지 외곽부는 조경시설물과 수림대로 조성하여 개방하고, 경사지는 가능한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법면조성 등 지표면을 연결 요함.</li> <li>◦ 단지 내 광장, 도로변 등의 거리 10m이상 폭1.5m이상의 보도 부분에는 조경기준 제6조에 의한 규격이상의 대경목 식재 요함.</li> <li>◦ 인공지반 위 조경식재지는 교목생육 최소심도인 1.5m이상의 토심 확보 요함.</li> <li>◦ 계획되어 있는 공개공지는 플랜트박스조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여 대형목으로 조경기준 제6조에 의한 그늘식재를 하여 도로변의 경관을 제고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.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.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.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.</li> </ul>	반영    반영   반영
회계재산 담당관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유잡종재산 과정동 216-33번지 민간 위탁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협의 요함.</li> <li>※ 자산관리공사(☎ 860-8000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였음.</li> </ul>	반영
문 화 예술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계획수립시 사업면적 전체에 대하여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에서 문화재지표 조사를 실시하고, 사업계획서 3부,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 3부(pdf파일 CD 3부 포함)를 사하구(문화공보과)를 경유하여 우리시 및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</li> <li>◦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 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이행조치 하겠음.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이행조치 하겠음.</li> </ul>	반영  반영

[사하구]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건설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정비구역내 편입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(도로,구거 등)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가 가능하며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우리구로 기부채납이 되어야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법령에 의거 정비기반 설치 후 기부채납토록 하겠음.</li> </ul>	반 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그러나 정비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주택 등 타 용도로 점유되어 실지 잡종지 상태인 국·공유지는 무상양도가 불가하므로 사업인가 신청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우리과와 협의토록 조치 요망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토록 하겠음.</li> </ul>	반 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급격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우회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영향평가시에 중3-103호선, 소3-167호선 계획도로개설 등 전반적인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중3-103호선의 경우 인접사업지인 극동스타글래스 사업자 및 사하구청과 개설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, 결정토록 하겠으며, 소3-167호선은 사업지구간을 9~12m로 확장하여 개설하겠으며, 사업부지외는 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음.</li> </ul>	반 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도시계획시설(도로)은 『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』 및 『도시기초시설물설치·관리기준』 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음.</li> </ul>	반 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우리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선도로변 보도 연결사업(헴프형횡단보도)이 반영되어야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헴프형 횡단보도로 설치하겠음.</li> </ul>	반 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통안전시설물(신호등 횡단보도, 가감속차로 등)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구(건설과) 및 부산지방경찰청(경비과)과 의견협의 후 시행조치 필요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조치 하겠음.</li> </ul>	반 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기타 관련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.</li> </ul>	반 영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지적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과정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등록사항정정(불부합지) 완료 되었으며 기타 지적정리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건축허가 또는 아파트 사업승인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을 통지 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승인시 검토하겠음.</li> </ul>	반영
재난 안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(영향평가대상사업 등) 및 부산광역시 환경·교통·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(영향평가대상사업) 제1항 [별표] 제3호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15만㎡ 이상이나, 신청 과정2구역은 40,405㎡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,</li> <li>◦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에는 포함 되지 않으나, 개발로 인한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, 사업시행시에는 자체 재해 지감방안 수립·시행등 재해예방에 안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토록 하겠음.</li> </ul>	반영
환경 위생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될시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처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여야 함.</li> <li>◦ 수도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 「별표2」에 의거 수도꼭지(샤워용, 샤워·욕조용, 세면용, 세면·샤워용, 주방용) 및 변기(로탱크형 대변기, 세척벨브부착형 대변기, 소변기) 등 절수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며, 별도로 환경보전계획을 작성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였음.</li> <li>◦ 관련 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토록 하겠음.</li> </ul>	반영  반영

관련부서	협 의 의 건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환경 위생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(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) 규정에 의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등에 의거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입주 3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.</li> <li>◦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(동법 시행규칙 별표 15)을 신고하여야함.</li> <li>◦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대상(동법 시행규칙 별표 8) 기계·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일 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여야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음.</li> <li>◦ 사업시행전 적법하게 신고하도록 하겠음.</li> <li>◦ 사업시행전 적법하게 신고하도록 하겠음.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
재무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(안) 과 관련하여 국·공유재산매수에 관한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, 재경부 소유의 괴정동 216-33번지는 재정경제부 국유재산 위임 위탁기준에 의거 민간위탁된 재산이므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◦ 우리구 소유의 괴정동 213번지는 현재 소로와 접해있는 공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, 괴정동 산1-61번지와 산1-63번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므로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시기 바라며, 사업시행자는 국·공유재산을 매수하기 전에는 일체의 착공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였음.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전 협의토록 하겠음.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

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도시개발 추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규모로 분산된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(공공공지의 결정 기준) 및 제61조(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)에 의거 공공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및 위치에 적정하도록 계획되어야 하겠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련 기준에 의거 적정하도록 계획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용적률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규모에 대하여 산출근거가 제출되어야 하겠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비계획신청 서류에 산출근거가 제출되어 있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3-A호선)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(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)에 의거 도로의 효율 및 교통소통 최대화,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는 계통화된 도로망 형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3-167호선, -B호선) 갈림길까지 기존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중3-135호선)을 변경(연장)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련기준에 의거 도로만을 계획하였으며,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 제139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(권한의 위임) 별표19에 의거 특수도로인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3-B)의 결정은 시장권한임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3-B호선은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하지 않고, 공동주택용지로 사용토록 계획하였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하수도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설치 계획되어야 하고, 또한 하수도법, 하수도시설기준, 부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관거 설계·시공 및 인수지침 등의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겠으며,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·오수관은 분류식을 계획하였고, 하수시설은 관련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하겠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지는 하수처리구역상 장림처리구역으로서 오수처리는 강변사업소에서 처리토록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(하수도과)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,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부산광역시 하수도과와 협의하였음.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수처리 시설은 사업예정지 일대 북동측 상부 산지부 등을 고려한 배수처리구역 지정 및 적정 강우강도 적용하여 강우 시 하수처리 지장이 없도록 관망 및 관경 등 배수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·계획한 후 설치되어야 하겠음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.</li> </ul>	반영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지 역 경제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상림분야(산1-35번지 외 26번지, 편입면적(19,759㎡)</li> <li>- 주택재개발 결정지에 편입되는 산지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,</li> <li>- 관계법에 적합하여 주택재개발 결정으로 산지전용시에는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삼림훼손 면적을 최소화하고 각종 산사태 등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,</li> <li>- 주택재개발 결정시 편입임야는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인가 신청 시 관련서류(산지전용)를 첨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시행시 이행토록 하겠음</li> <li>◦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하겠음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협의토록 하겠음</li> </ul>	반영  반영  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행정재산 분야(산1-61번지 외 1필지, 편입면적(947㎡)</li> <li>-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산1-61번지, 산1-63번지 내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시 매각이 불가능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시행인가전 협의토록 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농지분야(괴정동 218-32번지, 편입면적(2,510㎡)</li> <li>- 해당 농지는 자연녹지지역(1972.12.30)에서 일반주거지역(1986.12.02)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농지법 부칙 제9조 제4항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하겠음</li> </ul>	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후 사업인가 신청시 농지보전 부담금 조달계획(납부협약서)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</li> </ul>	반영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교통행정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통영향평가대상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·교통·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◦ 주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차대수 : 법정 774대, 수요 890대</li> <li>- 계획주차 : 825대(법정의 110.1%, 수요의 95.7%)</li> <li>- 설치방법</li> <li>- 주차방법, 부산시·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차량 진출입시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 등 안전대책 강구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- 장애인용 주차장 법정면수 확보 및 엘리베이터 인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◦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지 내 보행시설은 보행자 안전 강구 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 </li> <li>◦ 교통안전 및 기타(주민교통 불편사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지 내 보도는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자 보도, 인도와 차로횡단 보도 연결되는 부분 턱 없애기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하였음</li> <li>◦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,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하여 설치 계획되었음</li> <li>◦ 단지 내 보도를 최대한 확보하고, 차량통행과 보행동행을 분리 계획하였음</li> <li>◦ 단지 내 보도는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겠음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
청소행정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폐기물 관련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사 중 건설폐기물 발생시</li> </ul> </li> <li>◦ 당해 건설공사 착공일전까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공 후 생활쓰레기 처리 시</li> </ul> </li> <li>◦ 생활쓰레기 공동수집용기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치기준 : 30세대 당 700ℓ들이수집용기 1개씩</li> </ul> </li> <li>※ 1인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0.25kg 기준으로 주2회 운반처리 가능한 적정용량 설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공사 착공신고 전까지 실시토록 조치하겠음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토록 하겠음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



**【관련기관】**

관련부서	협 의 의 건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서 부 교육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괴정2주택재개발사업예정지는 향후 사업이 완료되어도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으나 통학로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등, 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사시 이행조치토록 하겠음.</li> </ul>	반 영
부산지방 경찰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동주택 승인시 재개발 예정지점은 총 753세대에 연면적이 110,361.73㎡로서 이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므로 교통체계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건은 교통영향평가의결 사항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통체계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에 대하여는 사하구(건설과) 및 부산지방경찰청(경비과)와 의견협의 후 시행 조치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음.</li> </ul>	반 영
낙동강 유역 환경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의하면 정비예정구역이 478개소, 24,932.3천㎡로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 부산광역시의 인구 감소경향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공급과잉으로 인한 자원낭비, 불필요한 수요유발, 인구의 도심 집중에 따른 환경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범주안에서 재개발이 되도록 부산광역시와 협의·추진하여야 함.</li> <li>○ 동 계획구역의 건축물총고 및 배치계획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·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 구역 주변 동주대학 등 교육시설과 주거지역의 일조권 침해 방지.</li> <li>- 구역 남측 낙동로(대로 1-6호선) 등 주요 조망점에서 시악산 스카이라인의 조망경관 보호 및 경관통로(회각시랑)확보.</li> </ul> </li> <li>○ 공원·녹지계획지표연구보고서(붙임)를 참조하여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, 소음 등 환경영향을 완화하는 적정 이격거리 확보 및 녹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거지로 이용된 자연녹지지역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녹지로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·시행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으며, 부산광역시와 협의·추진토록 하겠음.</li> <li>○ 적정높이 계획으로 주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음.</li> <li>○ 구역내 동경축으로 경관통로를 확보하도록 공동주택배치 및 총고 계획을 수립하였음.</li> <li>○ 교통시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의 저감을 위하여 도로변에 적정 이격거리 확보함과 동시에 조경 및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계획하였음.</li> <li>○ 향후 자연녹지지역은 공공공지로 활용되어 녹지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음.</li> </ul>	반 영  반 영  반 영  반 영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낙동강 유역 환경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구역내 발생하는 옹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, 녹지시설의 조기 식재등을 통한 이질감 해소</li> <li>- 구역내 '천, 구'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은 향후 도로로 이용계획이나, 가능한 한 단지내 친수공간(협소하지만)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 검토.</li> <li>• 구역내 보도, 주차장, 옥상 등에서 발생하는 우수와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투수성포장재 사용, 우수침투 화단 또는 자갈여과층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.</li> <li>• 발생하는 오수를 장림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할 계획이므로 동 구역의 최초 발생 오수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 조치를 하여야 함.</li> <li>•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대책과 비산먼지, 소음 등으로 인한 주변 주거지역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.</li> <li>• 건축물 철거시 정화조 등의 우수-분뇨를 우선 처리하여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고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옹벽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 자연석쌓기 등으로 대체하여 계획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.</li> <li>• 해당 재산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.</li> <li>• 구역내 보도, 주차장 등은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토록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시 반영토록 하겠음.</li> <li>• 사업시행인가시 부산시 하수도과 및 구청 하수도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반영조치 하겠음.</li> <li>• 주변환경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침사지, 가배수로, 살수 등의 대책을 세워 이행조치토록 하겠음.</li> <li>• 지장물 철거시 분뇨 등 각종 생활폐기물을 우선 수거 처리토록하며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의거 재활용하도록 하겠음.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
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사하사업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지는 급수가능 지역이며,</li> <li>• 계량기 설치장소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건물입구 및 단지내 최저지점에 설치되도록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, 전기시설 및 정화조 등 기타 지하매설물 등이 없어야 합니다.</li> <li>• 신청지 진입도로 및 현황도로상에 분상수도관을 부설할 시 사유지 및 보상 등의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하고</li> <li>• 지하저수조는 자체기압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팔히 설치하여 급수공급토록 하고,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설치기준에 적법하게 시설하여야 하며,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</li> <li>•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</li> <li>•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</li> <li>•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
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<p>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사하사업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옥내배관은 수도법 제13조 ②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, 각종 급수용구는 수도법 제11조 ②항에 의거 절수형기 자재 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◦ 업종분리를 위한 급수장치 설치 시에는 옥내 배관을 분리하여야 하며</li> <li>◦ 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굴착은 관련부서(건설과)와 별도 허가를 득하여야 함으로 도로굴착 허가 여부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이 가능하므로 건물 입주 6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◦ 계량기 신청할 시 예상 급수 사용량을 분석하여 적정구경 계량기가 되어야 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조치하겠음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
<p>(주)부산 도시가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도시가스 계획관로 구간은 관할 구청의 도로굴착조정심의 시 굴착허가조치가 되면 공사시행 가능합니다.</li> <li>◦ 공급압력이 중압(D=200A)이므로 부재 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지역 정압기(압력조정장치) 설치를 위한 정압실(가로2m×세로4m×높이3m)을 부지 내 건물 설계에 포함하여 건축하여 주시고, 정압실 원방감시용 통보시설인 전기, 전화선은 별도 인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 정압실 위치는 및 건축시행시기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 부산도시가스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◦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측에서 분양공고 및 공급계약서상에 명기하여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인들에게 있음을 반드시 주치시켜주시기 바람, 동 내용이 명기된 분양공고지 및 공급계약서 각1부를 부산도시가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단, 지역정압기중 고용으로 사용되는 곳은 부지점용료 지급기준인 전년도 공사시가(원/㎡)×정압실 기초면적(㎡)×요율(25/1000)로 연간 점용료를 산정한다.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심의후 이행조치하겠음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해당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음</li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조치하겠음</li> </ul>	<p>반영</p> <p>반영</p> <p>반영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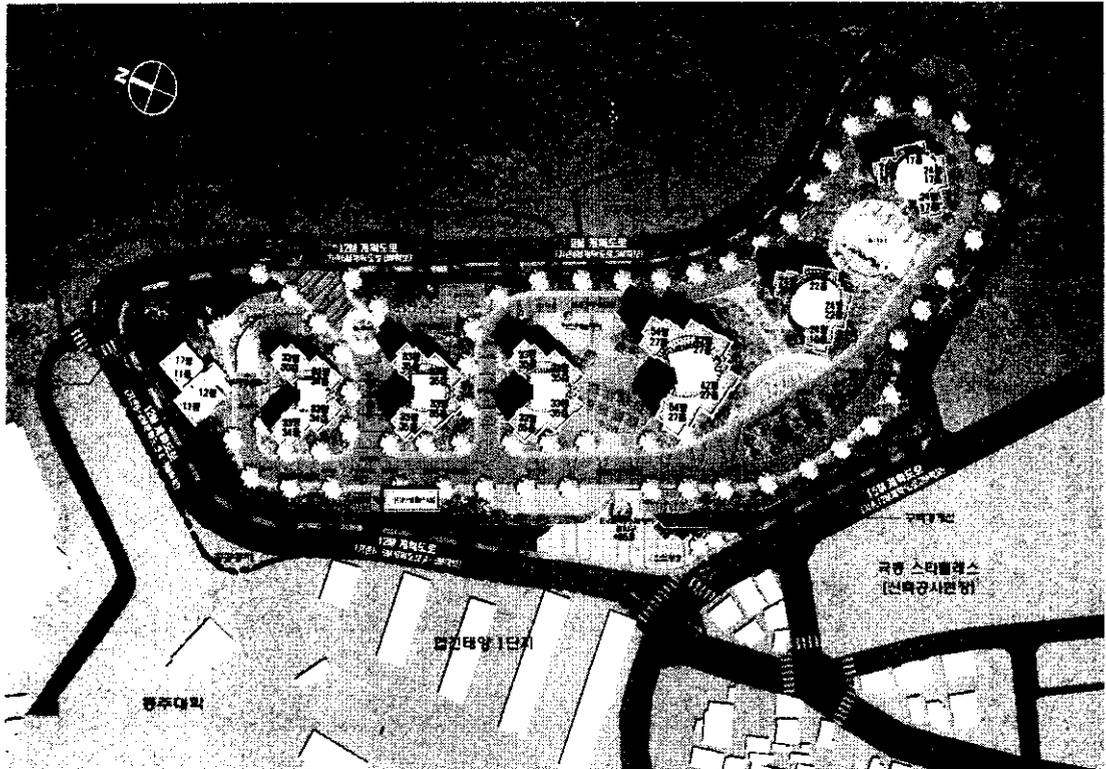
관련부서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반영 여부
(주)부산 도시가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아울러 상기 지번에 건축 예정인 공동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관련 사항은 2004년도 동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저압배관이 설치되었으므로 공급 시설의 이설 및 폐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, 주택법제18조, 제19조, 제27조 따라 동 시설물과 관련한 손실보상 문제 등이 우선 협의되어야 최종 공급 여부 검토가 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조치토록 하겠음</li> </ul>	반영
한국자산 관리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과정동 216-33번지의 국유재산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 제66조(국·공유재산의 처분 등)에 의거 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,</li> <li>◦ 다만, 정비구역 내의 대부재산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대부계약을 해약해야 할 경우 피대부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배상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관련법령에 의거 국유재산으로 착공 전 매수토록 조치하겠음</li> </ul>	반영



## 개 발 계 획(안)

대지위치	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16-10번지 일원	
대지면적	40,018㎡(12,105평) - 실사용 대지면적 : 31,599㎡(9,559평)	
연면적	110,107.81㎡(33,308평)	
	지상층 연면적	79,347.81㎡(24,003평)
	지하층 연면적	30,760.00㎡(9,305평)
건축면적	5,895.00㎡	
건폐율	18.66%이하	
용적률	251.11%이하	
주차대수	859대(법정 763대) - 112.58%이상 확보	
평형	17평/68세대, 24평/153세대, 33평/412세대, 42평/54세대, 54평/54세대	
세대수/층수	741세대 / 지하3층~지상35층	
용적률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</li> <li>- <math>1.5 \times (\text{제공면적 } 5,127\text{㎡} \div \text{제공후 대지면적 } 31,599\text{㎡}) \times 200\% = 48.7\%</math></li> <li>- 기준용적률 : 220%(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)</li> <li>- 허용용적률 : <b>268.7%</b></li> <li>- 계획용적률 : <b>255%이하</b></li> </ul> <p>※ 계획용적률은 주변여건과 대상차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 계획</p>	

# 건축배치(안)



# 조감도(안)

